

#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근수 의원 대표발의]

# 검토보고서

2024. 4. .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한근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 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 가정 내 갈등,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과 추진사업을 규정(안 제5조~제6조)
- 라. 청소년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청년정책과

라. 입법예고 : 2024. 4. 5. ~ 4. 10. (6일간) / 해당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의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청소년쉼터 등 종합적이고·구체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건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참고자료 1 : 청소년 현황

- 남양주시 청소년 인구 : 128,006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년 2월말 기준)
  - 경기도 청소년 인구 : 2,235,253명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6순위)
- 가출 등 위기청소년 현황
- 가출 청소년 규모 : 약 11만 5,741명 (2020년 기준,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실종·가출인 신고접수 현황 (18세 미만 아동, 출처:경찰청)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건)	21,551	19,146	21,379	26,416	25,628

#### - 가출 경험 및 이유

(단위: %)

	가출 경험 <sup>1)</sup>	가출이유 <sup>2)</sup>						
		부모님과의 문제	학업문제	친 <del>구들</del> 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정의 경제적 문제	학교문제	기타	
2022	3.6	56.6	21.7	8.9	1.6	3.7	7.5	
2021	3.2	62.4	18.5	9.7	1.4	0.6	7.4	
2020	2.9	61.0	20.8	8.0	2.3	2.0	5.9	
2019	3.5	61.7	15.9	9.6	2.3	1.1	9.5	
2018	3.8	58.0	15.6	12.0	4.1	3.0	7.2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초(4~6)・중・고등학생 대상

주 : 1)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중

2)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는 사람의 주된 가출 이유

# ■ 참고자료 2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전국 지방자치단체 : 28개 지자체

- 경기도 지자체 : 6개 (본청 포함)

<b>연</b> 번	지역명	조례명
		7 -
1	경기도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	경상남도	경상남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1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1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	전라남도	전라남도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조례
14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16	충청남도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1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20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27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8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붙임1

### 관계법령

#### ☑ 「청소년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5. "청소년보호" 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 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5. "가정 밖 청소년" 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 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 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 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 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⑤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 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 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예산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재정 수반 요인
  - 제6조(추진사업 등)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 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3조제2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 움
  -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 이며 향후 사업 확대에 따른 비용은 현재 추계가 어려움

#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청년정책과장 박미경